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사학지원계정을 사용하는 사업 범위 확대〉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01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11.
3. 회부연월일 : 2025. 8. 1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이 대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학 유휴 자산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학의 학교복합시설은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학진흥기금 용자 등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 내 사학지원계정의 사업범위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br>1. ~ 4의2. (생략)<br><u>&lt;신설&gt;</u><br><br>5.·6. (생략)<br>② (생략) |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br>-----<br>-----.<br>1. ~ 4의2. (현행과 같음)<br><u>4의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u><br>5.·6.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sup>1)</sup>되면서 현재는 ‘학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 하고 있어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이 대학으로까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대학교 및 폐교된 대학교의 시설을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sup>2)</sup>로 정할 수 있게 됨.

그런데, 대학교의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시설보다 규모가 크고 사용인원이 많다는 점에서 운영·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추진에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학교 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사학지원계정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또는 폐교된 대학의 학교복합 시설 건립 촉진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 법률 제20668호, 2025. 1. 21. 일부개정

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현행법상의 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sup>3)</sup>에서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사학진흥기금은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되고 있음. 그리고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의 재원은 각각 다음과 같음.

### <사학진흥기금 계정별 재원>

| 구분 | 사학지원계정                                                                                                                                                                                                                       | 청산지원계정                                                                                                                                                                                                              |
|----|------------------------------------------------------------------------------------------------------------------------------------------------------------------------------------------------------------------------------|---------------------------------------------------------------------------------------------------------------------------------------------------------------------------------------------------------------------|
| 재원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출연금</li> <li>○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i> <li>○「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26조에 따른 차입금</li> <li>○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li> <li>○「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li> <li>○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출연금</li> <li>○「사립학교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li> <li>○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i> <li>○「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26조에 따른 차입금</li> <li>○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li> <li>○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li> </ul>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한편, 사학지원계정의 용도를 살펴보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학기관의 교육용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사학지원계정 사용 용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개정안에 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정부의 출연금,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채권 발행 등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확충 확대와 대학을 통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아울러 대학의 입장에서는 복합시설을 통하여 일정부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재원 조달 측면에서 초·중학교의 경우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 복합시설의 경우는 별도의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현재 사학진흥기금은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금인데, 학교복합시설은 대학 등이 제공한 부지 내에 지자체의 부담으로 건립하는 구조(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대학 공동소유)이고 사학지원계정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용자 등을 통해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도록 문구를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사학기관 교육환경·경영개선 지원의 다각화로서 복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해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사립대학의 폐교 절차가 가속화되면 확대될 폐교 부지 및 유휴시설 활용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학진흥기금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경우 기금의 사용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193 |